## iii. 도시환경 및 문화의질

- 1. 환경질의 부하량
  - 1) 대기관리

■ 대기관리			
1. 정의	전체 행정구역의 대기오염도		
2. 측정단위	PPM, µm		
3. 지표선정의 필요성			
- 목 <b>적</b>	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(危害)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·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지표이다.		
- 고려 요소	▶ 고려 요소 범위	▶ 핵심요소	
	-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: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, 기계, 기구,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- 대기오염도 예측・발표의 대상 오염물질 1. 미세먼지(PM-10):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(∠m) 이하인 먼지 2. 미세먼지(PM-2.5):입자의 크기가 2.5마이크로 미터(∠m) 이하인 먼지 3. 오존(○3) - 대기(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/환경기준)	- 지자체별 대기오염 예·경보제 -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중·장기 게획 - 지자체 녹지율(공원, 녹지, 습지등) 증가	

## 2) 소음관리

■소음관리			
1. 정의	지자체별 소음도		
2. 측정단위	dB		
3. 지표선정의 필요성			
- 목적	공장·건설공시장·도로·철도 등 일상생활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모든 국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 지표이다.		
	▶ 고려 요소 범위	▶ 핵심요소	
- 고려 요소	<ul> <li>소음·진동배출시설: 소음을 발생시키는 공장의 기계·기구·시설,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함</li> <li>소음·진동방지시설: 소음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소음을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함</li> <li>방음시설(防音施設): 소음배출시설이 아닌 물체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을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함</li> <li>소음발생건설기계: 건설공시에 사용하는 기계중 소음이 발생하는 기계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함</li> <li>생활소음 규제 기준 참조(소음·진동 관리법 시행규칙)</li> </ul>	- 완충녹지 등의 설치 - 방음벽 및 소음방지시설의 설치 - 소음발생 저감 시설의 설치	